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1진정0032900·21진정0388301·21진정0443701·21진정0501001(병
합) 교정기관의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 진 정 인
1. ○○○
 2. △△△
 3. □□□
 4. ●●●

- 피진정인
1. ○○○○구치소장
 2. ○○구치소장
 3. △△구치소장
 4. ○○교도소장

주 문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비
인도적인 처우인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1진정0032900(○○○○구치소)

진정인 1은 ○○○○구치소에 수용중인 수용자이다. 피진정인 1은 2020. 12. 3.부터 5인실에 진정인 1을 포함하여 9명을 수용하여 진정인 1에게 감내하기 힘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나. 21진정0388301(○○구치소)

진정인 2는 2021. 4. ○○구치소에 수용된 수용자이다. 진정인 2는 정원이 7~8명인 약 16.5m² 거실에서 2021. 5.부터 진정인을 포함하여 10명이 사용하고 있다. 같은 거실에 정신과 약을 투약 받는 2명의 수용자도 함께 있는바, 투약자들이 약에 취해 누워있으면 거실을 지나가거나 앉아서 재판 준비를 하기도 어렵다.

다. 21진정0443701(△△구치소)

진정인 3은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이다. 진정인 3은 2021. 2. △△구치소 수용 중, 약 19.8m²~23.1m² 되는 공간에서 12~14명이 같이 생활하였다. 진정인 3은 당시 취침 시에 옆으로 돌아누운 자세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과밀수용으로 인해 기저질환인 '강직성 하지마비' 증상이 악화되었다.

라. 21진정0501001(○○교도소)

진정인 4는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진정인 4는 2021. 7. 2. 작업면제 후 기결 7하6실로 거실이 지정되었는데, 해당 거실은 면적이 10.25m²로 3명 정원임에도 현재 5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진정인 2는 피부질환, 비염 등이 악화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2. 피진정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진정인 1(○○○○구치소)

2020. 12.경 ○○○○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한 확진수용자, 밀접접촉수용자, 음성수용자로 분리할 수밖에 없는 전례 없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약 4일 동안 불가피하게 진정인을 포함한 9인의 수용자를 대거실에 수용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1인당 실제 개인사용 가능면적이 1.06㎡와 1.27㎡로 과밀수용 한 것이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으나, 대법원 등 각급법원의 과밀수용 관련 확정판결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급법원의 과밀수용 판단기준도 아직 확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인 1은 막연히 과밀수용 되어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나, 수용생활이 인간에게 수인한도를 넘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나. 피진정인 2(○○구치소)

2021. 5. 28. 기준 ○○구치소는 수용인원 2,019명으로 정원 1,650명을 초과하여 수용률 122%의 과밀한 수용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에 불가피하게 진정인 2의 수용거실에 10명의 수용자가 수용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전국 교정시설이 유사하게 겪고 있다. 피진정인 2는 최다 인원이 수용된 거실의 현황을 기관장에게 매일 보고되는 현황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취침자리 지정제' 등을 시행하여 과밀수용에 따른 수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선 교정기관으로서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운 실정이다.

다. 피진정인 3(△△구치소)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진정한 3의 기저질환이 과밀수용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라. 피진정인 4(○○교도소)

수용거실의 정원은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82조에 따른 수용정원 산정 기준에 따라 정해지지만, 이는 행정조직 내부에서 통일적인 사무처리 지침을 위한 것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다. 관련법령에는 수용자들에게 확보해주어야 할 최소한의 수용면적 등과 관련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2021. 7. 2. ○○교도소의 수용률은 98%이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실이 아닌 격리수용동과 조사, 징벌수용동, 진정한 4가 수용될 수 없는 여수용동 및 미결수용동을 제외한 수용률은 108%에 달한다. 추가적으로 관련 지침에 따라 취업수용자와 미취업수용자의 구분, 처우등급별, 특정강력범과 기타사범을 구분 수용하고, 다시 의료수용동, 장애수용동, 자치수용동, 고령자 수용동 등을 구분하여 지정, 운영하므로 거실별 수용률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진정한 4의 수용거실 수용률은 이와 같은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각각의 진정서, 피진정인들 각각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1진정0032900(○○○○구치소)

1) 진정인 1(67세, 남성)은 2020. 4. 20. ○○○○구치소에 입소하였다가, 2021. 6. 14.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2) 진정인 1은 ○○○○구치소에 수용 시, 대거실(16.99㎡, 61동 6실)에 수용되었으며, 해당거실에는 2020. 12. 25.~28.까지 9인이 수용된 바 있다. 해당거실은 정원 5인의 거실면적(화장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은 16.99㎡(1인당 수용거실면적은 약 1.89㎡)이다.

3) 2020. 2. 24.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로 상향된 이후, 전국 교정시설은 신입수용자에 대하여 일정기간(1~3주) 예방 격리 수용하고 있다. 2020. 12. 7. 기준 ○○○○구치소 수용정원 대비 수용률은 116.6% (수용정원 2,070명, 현원 2,413명)이다.

4)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관련하여, ○○○○구치소 직원 1인은 2020. 11. 27. 코로나19 감염이 확진되었다. 이에 2020. 11. 27.~12. 12. 피진정기관 직원과 수용자 총 499명(직원 201명, 수용자 298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직원 11명이 확진된 바 있다. 이후, 2020. 12. 14. 직원 3명과 수용자 1명이 확진되었고, 같은 달 18일 전수검사 이후, 같은 달 28일까지 수용자 494명이 확진 판정되었다.

5) 법무부는 2020. 11. 28. ○○○○구치소를 비롯한 교정기관 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전국 교정기관에 출정, 접견 최소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바 있고, 피진정인은 같은 해 12. 18.을 전후로 ○○○○구치소 내 수용자 접견, 교화행사, 운동, 이송 등을 전면 중지한 바 있다.

나. 21진정0388301(○○구치소)

1) 진정인 2(46세, 남성)는 2020. 9. 27. ○○구치소에 입소한 후 생활하다가, 2021. 6. 10. ○○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이다.

2) 진정인 2는 2021. 5. 1.~6. 10. ○○구치소 나동 6층 1수용동 5실에서 생활하였다. 해당 거실의 정원은 5인이고 화장실 면적을 제외한 거실면적은 15.41㎡이다. 같은 기간 해당 수용거실의 실제 수용인원은 2021. 5. 3.~11.(약 9일) 8명(1인당 수용거실면적 약 1.92㎡), 5. 12.~24.(약 13일) 9명(1인당 수용거실면적 약 1.71㎡), 5. 25.~6. 2.(약 9일) 10명(1인당 수용거실면적 약 1.54㎡), 6. 3.~10.(약 8일) 9명(1인당 수용거실면적 약 1.71㎡)이다.

3) 2021. 5. 28. 기준, ○○구치소 총 수용정원 대비 수용률은 122%(정원 1,650명, 현원 2,019명)이다.

다. 21진정0443701(△△구치소)

1) 진정인 3(24세, 남성)은 2021. 2. 24. △△구치소에 피의 입소하여 생활하다가 2021. 5. 10. ○○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이다.

2) 진정인 3은 2021. 2. 24.~5. 10. 수용거실 1002-17, 1201-09, 702-06에 수용되었다. 그 중, 진정인 3은 2021. 3. 12.~5. 9. 702-06에서 생활하였는데, 해당 거실은 정원은 8인이고, 화장실 면적을 제외한 거실면적은 19.65㎡다. 같은 기간 해당 수용거실의 실제 수용인원은,

- ① 11명(1인당 수용거실면적 약 1.78㎡)이 수용된 기간이 약 3일,
- ② 12명(1인당 수용거실면적 약 1.62㎡)이 수용된 기간이 약 16일,
- ③ 13명(1인당 수용거실면적 약 1.51㎡)이 수용된 기간이 약 25일,

④ 14명(1인당 수용거실면적 약 1.40㎡)이 수용된 기간이 약 15일이다.

3) 2021. 4. 30. 기준, △△구치소 수용정원 대비 수용률은 121.3%(수용정원 1,580명, 현원 1,917명)이다.

라. 21진정0501001(○○교도소)

1) 진정인 4(1988년생, 남성)는 2019. 7. 3. 수감된 이후, 2020. 11. 26.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입된 수형자이다.

2) 진정인 4는 2021. 3. 22.~7. 1. 기간 중 개방지역작업장에서 출역하다가 7. 2. 작업면제 후 미지정 혼거수용 거실인 기결 7하 6실로 거실이 지정되었다. 해당거실에는 2021. 7. 2.~같은 달 7. 기간 중 5인이 수용된 바 있다. 해당 거실의 정원은 3인의 화장실 면적을 제외한 거실면적은 10.25㎡(1인당 수용거실면적은 약 2.05㎡)이다.

※ 진정인 4가 문제제기하는 내용은 2021. 7. 2. 이후 기결 7하 6실에서의 과밀이나, 2020. 11. 26.(이입)~2021. 7. 7.(진정접수일) 사이 과밀수용된(1인당 수용거실면적 2.58㎡ 미만) 기간을 계산하면 총 224일 중 120일에 달한다(2020. 11. 26.~2021. 1. 18., 2021. 4. 30.~5. 10., 2021. 5. 14.~7. 7.).

3) 2021. 7. 2. 기준, ○○교도소 총 수용정원 대비 수용률은 98%(수용정원 1,490명, 현원 1,465명)이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7조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비인도적 처우는 우리나라가 역시 가입하고 있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제1조의 “고문”(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바, 제2조 제1항에 따라 체약국인 대한민국은 그 방지를 위해 실효적인 입법 행정 사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피구금자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일반적 원칙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제13조는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거주설비, 특히 모든 취침 설비는 기후상태와 특히 공기의 용적, 최소건평, 조명, 난방 및 환기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가의 형벌권은 해악에 대한 응보로서의 성질을 가지지만 그 수단과 정도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하여 행사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

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行刑)에 있어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수형자의 경우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격리된 채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위와 같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고 밝힌 바 있다.

나. 과밀수용이 초래하는 문제점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함) 제57조는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수형자는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9조는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용자 처우원칙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형집행법의 목적(제1조)에 근거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수용공간의 부족을 야기하여 개인의 특성에 따른 분류처우는 물론이고 적절한 처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다.

2)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수용자에게 더 큰 분노, 좌절, 긴장을 일으키며 원치 않는 대인관계를 피할 수 없게 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게 되고, 교정교화 작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국내외의 연구가 대부분 말하는 공통현상이다.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심리적 변화는 구금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수용자의 공격성향이 증가하게 되며, 대인공포증이나 자기도피, 무관심, 권태감이 증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수용자 상호간의 폭

행, 교도관에 대한 수용자의 폭행, 또는 수용자의 자살 등 끊임없는 교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한 공간에 수용자를 장기간 수용하는 것은 한 개인의 육체를 넘어 인격을 파괴하고, 그것은 동료 수용자와 교도관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낳게 한다는 것이 과밀수용을 연구하는 모든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다.

다. 과밀수용의 기준

1) 각 국가마다 경제력이 다르고 법률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과밀수용인가에 대한 확고한 기준은 없다. 다만 비교법적 검토와 권위 있는 국제적 권고를 고려할 때 적절한 기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단계라고 본다.

2) 수용자 1인당 최소 기준면적의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독거실의 경우 유엔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에서는 ‘개인의 건강에 필요한 면적’, 국제적십자사는 5.40㎡, 유럽고문방지협약위원회는 7㎡, 미국은 5.57㎡(연방시설), 독일은 6~7㎡(독일의 경우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은 2005년 11.54㎡의 거실에 3명을 수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고 판시하면서 수형자 개인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바닥면적 6~7㎡, 전체 공간 16㎡으로 제시하고 있음), 일본은 10㎡를 최소기준 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정시설의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은 개별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수용자의 신체조건 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으나, 인간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라는 점에 비추어 위의 국제적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우리나라의 경우 형집행법 제14조는 수용자는 독거수용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실에선 공간부족과 절대적으로 많은 수용자 수, 국

가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혼거수용이 오히려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가 정한 수용자 최소수용면적은 혼거실의 경우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을 2.58㎡로 규정하고 있다(「법무시설 기준규칙」(2011. 12. 29. 법무부 훈령 제848호) 제3조 제3항 및 별표 1 및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82조 제1항 제2호). 이것은 위에서 본대로 독일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미연방교정시설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욱 문제는 이 사건 진정의 인정사실에서 보듯 상황은 이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요약하여 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수용면적은 규정 자체가 주요 국가나 국제기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며, 현실은 그 규정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2016년 과밀수용 관련 헌법소원 사건(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3헌마142)에서 청구인을 2일 16시간 1.49㎡에, 6일 5시간 1.79㎡에 각 구금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

라. 이 사건 진정에 대한 판단

1) 진정인 1 내지 4는 각기 다른 시기에 수도권에 소재한 다른 구치소, 교도소에 수용되었던 수용자들이다. 진정인들은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다른 수용자와의 불화, 기저질환의 악화,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음을 호소하고 있다. 진정인들은 모두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상태의 거실에서 생활하였는데, 심한 경우 1인당 수용거실면적이 약 1.40㎡인 거실에서 15일 가량을 생활한 진정인도 있었으며, 수용된 총 224일 중에 약 120일 동안 과밀 수용의 상태에서 생활한 진정인도 있었다. 진정인들 각각의 경우는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수면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협소한 정도(일부는 아무리 조심해도 취침 시 신체접촉이 불가피할

상황으로 추정된다)에서 생활하여야 했는데, 이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진정한들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2) 피진정인들은 진정한들에 대한 과밀수용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기관 전체의 수용률이 정원을 초과하여 진정한들 각각에 대한 처우가 불가피하다고 진술하거나,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개별 수용자 거실 조정의 어려움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피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상황은 개별 교정기관이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를 하면서 과밀해소에 필요한 재량의 여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과밀수용의 원인이 온전히 교정기관에 있다기보다는 수용자의 증가, 가석방제도의 소극적 운영, 교정시설의 확충·운영의 어려움 등 교정기관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에 기인한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3) 그러나,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은 이제 더 이상 미래 과제로 남겨둘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밀수용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상당 시간이 흘렀음에도 개선의 조짐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진정한들의 인권침해 주장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기초해 정부에 과밀수용 상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4)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수용자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인당 수용거실의 면적뿐만 아니라 수용시설 전반의 운영

실태와 수용자들의 생활여건 등 수용거실 현황 등, 과밀수용의 기간, 접견 및 운동 기타 편의제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수용시설 기준이 충족되고 운동시간 확보, 접견교통 허용 등 다른 기준을 아무리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가형별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처우라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처우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자유권규약에서 금하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하며 고문방지협약상의 고문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및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1. 5.

위원장 박찬운

위원 석원정

위원 윤석희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이거나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3.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문”이라 함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 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합법적 제재조치로부터 초래되거나, 이에 내재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조

1. 당사국은 자기 나라 관할하의 영토 내에서 고문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적인 입법·행정·사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4.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넬슨만델라 규칙’)

제12조 ① 취침설비가 각 방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개개의 피구금자마다 야간에 방 한 칸이 제공되어야 한다. 일시적인 과잉수용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중앙교정당국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방 한 칸에 2명의 피구금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② 공동침실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환경에서 서로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피구금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시설의 성격에 맞추어 야간에 정기적인 감독이 수행되어야 한다.

제13조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거주설비, 특히 모든 취침 설비는 기후상태와 특히 공기의 용적, 최소건평, 조명, 난방 및 환기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89조 ③ 폐쇄교도소 내 수형자의 수는 개별처우가 방해받을 정도로 많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몇몇 나라에서는 이들 교도소의 수용인원이 500명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개방교도소의 수용인원은 가능한 한 적어야 한다.

④ 다른 한편으로, 적당한 설비를 마련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교도소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제113조 미결수용자는 기후에 따라 상이한 지역적 관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 거실에서 혼자 자야 한다.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제6조(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①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의 기능·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늘릴 수 있다.

②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